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430 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5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은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 립·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위임없이 교육감에게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"시행해야 한다"를 "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"로 수 정함(안 제4조제1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"시행해야 한다"를 "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"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	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
	감은 조식 지원 및 조	감은 조식 지원 및 조
	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	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
	위해 서울특별시교육	위해 서울특별시교육
	청 조식 지원 등을 위	청 조식 지원 등을 위
	한 기본계획(이하 "기	한 기본계획(이하 "기
	본계획이라 한다")을	본계획이라 한다")을
	수립하고 <u>시행해야 한</u>	수립하고 <u>예산의 범위</u>
	<u>다.</u>	내에서 시행할 수 있
		<u>다.</u>
	② (생 략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이라 한다")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
 - 2.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
 - 3.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 - 4.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
- 5.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(조사 등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.
- 제7조(종전의 제4조)제1항 중 "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

다)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조식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
	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조식에 필
	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조식 챙기기
	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.
<u>〈신 설〉</u>	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조식 지
	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
	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
	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이라
	한다")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
	에서 시행할 수 있다. ② 기본계획에
	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
	<u>한다.</u>
	1.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
	<u>향</u>
	2.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
	<u>안</u>
	3.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	4.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
	<u>육 및 홍보방안</u>
	5.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
	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〈신 설〉	제5조(조사 등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
	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
	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
	를 매년 실시 한다.
<u>제3조</u> (생 략)	제6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</u> 조식 운영의 지원) ① <u>서울특별</u>	<u>제7조(</u> 조식 운영의 지원) ① <u>교육감</u>
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	
<u>다)</u> 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3조의	
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	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제8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조식 챙
	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
	및 홍보를 할 수 있다.